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18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조승래·황정아·장철민

박정현 • 이정문 • 한준호

강유정 · 송기헌 · 이기헌

복기왕 • 위성곤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 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과몰입"을 "과몰입"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중독·과몰입"을 "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을 "과몰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 과몰입 예방 과몰입 예방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제27조(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과</u>몰입-----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 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 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 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 는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기 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 방하고 신체적 · 정신적 · 사회 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 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